서울특별시 미포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시보고서

2021. 12. 8.
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1. 11. 19. 최은하 의원 외 13명

나. 회부일자 : 2021. 11. 22.

다. 상정일자 : 제251회 제2차정례회 제9차 위원회(2021. 12. 8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정혜경 의원

가. 제안이유

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노동환경 개선, 사회안전망 구축과 올바른 노동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~안 제2조)
- 2) 구청장의 책무 및 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(안 제3조~안 제4조)
- 3) 지원의 범위(안 제5조)

- 4)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(안 제6조)
- 5) 교육 및 홍보(안 제7조)
- 6) 표창(안 제8조)

3. 검토보고 (신준호 전문위원)

가. 조례 제정 배경

최근 경비원 등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근로자가 입주민의 갑질과 열악한 근무 형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, 이 같은 근로환경으로 공동주택 근로자를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내모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. 이에 부당한 업무지시 및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도록 최근 「공동주택관리법」이 개정되는 등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공동주택 구성원 상호 간의 상생과 협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 조문 검토

-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 정함.(안 제3조)
- 공동주택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 여야 할 입주자 등의 책무를 규정함.(안 제4조)
- 공동주택 노동자의 기본시설 설치와 법률 및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함.(안 제5조)
- 공동주택 노동자 실태조사 및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한 행정 지도, 인권 교육 등에 대하여 규정함.(안 제6조 ~ 제7조)

다. 종합의견

- 서울 자치구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입주민의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에 극단적인 선택1)을 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음. 이에 따라 경비원 등 근로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갑질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사회적 약자로 떠오른 공동 주택 내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움직임이 가속화 되고 있는 시점임.
- 최근 국회에서는 소위 '경비원 갑질 금지'를 위한 내용으로 「공동주택 관리법」의 개정이 여야합의로 통과되었음.
- 상위법 개정을 기반으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 주택 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인권보호를 위한 조례가 제정된 상태임.
- 따라서,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·복지 증진 차원의 필요한 사항으로 보이며, 이러한 노력으로 경비원 등 근로자가 극 단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적극적 행정 조치 의 일환으로 판단되어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됨.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- 5. 토론요지 : 없 음
-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- 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- 8. 기 타 : 없 음

^{1) &#}x27;주민 폭행에 극단선택 경비원…경비초소 분향소엔 주민 추모물결',연합뉴스(2020.5.11.)